

제409회 정례회

'23. 6. 9.(금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 : 안치영 의원 등 7인

2. 발의일자 및 회부일자

- 발의일자 : 2023년 5월 31일
- 회부일자 : 2023년 6월 1일

3. 제안사유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는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므로, 충청북도 출연기관인 충북여성재단에도 이를 적용하고자 함.

4. 주요내용

- 결산 완료 및 결산서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 개정(안 제10조)
(당초) 세입·세출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
(변경)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함
-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조문 정비(안 제14조)
(당초) 조례에 → (변경) 조례를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「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9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·출연 기관은 매 회계연도가 끝난 후 2개월 이내에 결산을 완료하고 지체 없이 결산서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(2019.12.3.일부개정, 2020.6.4.시행).
- 그러나 현행 「충북여성재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조례」는 세입·세출 결산서와 사업실적을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됨.
- 이에 상위법을 적용하여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할 필요성이 있음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안 제10조는 상위법을 적용하여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및 결산서 제출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한 것으로 법적·내용적으로 타당함.
- 안 제14조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한 것임.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조례개정안은 상위법과 다르게 규정되어 있는 충북여성재단의 결산 완료 시기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되며, 조례 개정을 통해 적기에 결산이 실시함으로써 회계·결산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.